

WTO의 표준규약(standard code)

-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

김 승 진

한국통신연구개발원 표준연구단
TTA 지적재산권 실무작업반 간사

차 례

- | | |
|-------------------|----------------------|
| I . TBT협정의 연역 | IV . TBT규정상의 업무 및 권리 |
| II . TBT협정의 구성 | V . TBT 협정문 주요내용 |
| III . TBT협정 본문 특성 | VI . 우리 나라 TBT협정 운용 |

I . TBT협정의 연혁

세계 무역질서에 태풍을 몰고 온 우루과이 라운드는 2차 세계 대전후 국제 무역질서를 주도해온 관세와 무역 협정(GATT) 체제에서 비롯된 다자간 국제무역 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다자간 국제무역 기구(MTO :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를 창립키로 협약한 결과 탄생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세계무역기구

가 탄생하면서 기존의 국제 무역 협정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WTO체제는 기존 모범 체제인 GATT의 규범과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것은 물론 GATT외부에 존재했던 복수국간 무역 협상(PTN : Plurilateral Trade Negotiation)을 받아 들이고 국제 무역분쟁 해결절차(DSU)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WTO체제는 기존 GATT 규범, 복수국간 무역 협상, 국제 무역분쟁 해결 절차라는 3대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TBT)은 원래 복

수국간 무역협상으로 GATT 외부에 존재해 왔다. 복수국간 무역협상은 GATT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협상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기술장벽 협정은 WTO 체제가 발족한 이래로 내부 규정으로 편입되었다. 복수국간 협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협정은 우육 협정, 낙농제품협정, 정부조달협정(1997.1.1일 국내 발효), 민간 항공기 협정이 있다.

우리나라와 기술장벽 협정과의 관련은 역사가 깊다. 1979년 동경 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 협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듬해인 1980년 10월 2일에 발효되었던 것이다. 이 협정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입법 계수되자 우루과이라운드에 조인한 우리나라도 1993년 1월 1일에 국무총리 훈령 제 268조 "기술규정등에 관련된 규정안 입안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포고하여 기술장벽에 관한 질의처(inquiry point)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통신에 관한 질의처는 공업진흥청이 주관하고 있으나 실제는 외무를 경과하여 질의나 통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신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 직접 통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기술기준과가 주무부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업무분장이나 절차가 잘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진청의 주무자의 말에 따르면 대략 년간 300건 가량 질의와 통보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관여된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에 관한 국제분쟁이 발생하여 국제 무역 분쟁 해결절차에 이른 일은 없다. 그러나 현재 기술장벽에 관한 문제도 다른 무역 문제와 연계해서 무역 강대국들이 압력을 행사해오는 바람에 경제 수출의존도(약 70 %)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의 압력에 취약점을 심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그 결과 쌍무무역협상의 압력을 다자간 무역 협

상으로 처리하게 되어 우리나라도 개방압력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단편적이고 원칙적 문제에서만 우리나라를 다자간 무역 협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혜택이란 다른 개방 압력을 몰고 오는 유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이나 기술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국제 무역 분쟁절차에 의한 부당한 무역 사례의 구제도 개도국이나 우리나라같은 선진국 진입국가들에게는 명목상 문호개방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국제 무역분쟁 해결차를 운영하는 WTO 사무국과 패널들의 구성은 OECD국가들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WTO체제라는 국제 무역질서가 강요하는 무한경쟁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국제 무역에서 분쟁 예방적 차원과 국제 무역 운영의 묘리 습득, 그리고 기술 표준의 국제적 전략 수립을 위한 무대로써 기술장벽 협정을 활용하여야 한다. 국제 표준의 동향과 추세를 파악키 위해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질의를 행하고 우리의 표준체정이 외국의 항의나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장벽 협정이 부여한 현식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 동경 라운드에서 1979. 4. 12 채택
- 우리나라 1980. 10. 2 발효
- UR에서 입법 계수
- 기술 규정 등에 관련된 규칙안 입안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 268호 : 93. 1. 1.)
- 국내 질의처 설치 운영

II. TBT협정의 구성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은 표준에 관한 사항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표준규약(standard code)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표준을 규격이나 기술기준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이나 표준화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협정문에서 채택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은 전문가제 1조 일반 규정으로부터 제15조의 최종조항에 이르기까지 총 15개조 본문과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협정 일반론,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및 표준(standards)에의 적합, 정보 및 지원(제 10 조), 개도국의 차별적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협의 및 분쟁해결, 행정 사항, 기술 전문가 그룹(The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rade : 제 13 조)에 관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 전문
- 총 15조 본 조항
- 3 개의 부속서 (제 15조 5항 협정의 일부 임을 명기)

가. GATT와 UR의 TBT 차이

- GATT의 비관세 장벽과 밀접한 기술장벽을 무역 장벽으로 명시화
- 규제 대상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비정부 표준화기관에까지 확대
-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제품 성능 위주에서 공정 방법(PPMS :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으로 확대
- 분쟁 발생시 시정 권고에서 제도 개선조치를 강제할 분쟁 조정 및 제재 권한 확대
- GATT TBT와 유사성
 - 규제대상을 상품에 국한, 서비스 제외

- 정부 조달 제외
- 표준제정은 표준기구에 일임
- 국제표준 우선 준수
- 국제 표준과 다른 표준화 규격은 WTO(*MTO) 사무국을 경유한 체약국 통보
- 새로운 제도 도입 시행은 공표에서 시행 까지 유예 기간 허용
- 질의처 설치 및 지방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국제 표준 준수 종용

나. TBT의 전문

- 목적
 - 국제표준과 적합판정 제도가 국제무역에 기여를 인정(명문규정)
 -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의 무역상 기술장벽화 가능성 배제(반사적 효력)
- 예외 인정
 - 수출품의 품질보장, 인간 동식물 생명 건강 보호, 환경 보호, 기관적 거래 관행 방지, 안보 등의 예외 인정
- 개도국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무
 - 기술규정·표준·검사 및 인증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개도국 상황에 적합한 특성기술 규정, 표준 또는 부합성 평가절차의 채택을 인정

나. TBT의 일반 규정(제 1조)

- 규제의 범위
 -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표준, 기술규정
(포장표시, 등급표시 등의 모든 표시)
 - 표준과 기술 규정에의 적합 여부 판정 절차
 -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서비스 제외)
 - 제품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품질시스템 인증제도 : ISO 9000)
- 적용배제

-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 정부조달(PTN: 특정 복수국간 무역협상)

III. TBT협정 본문 특성

가. 주요 개정내용

개정 방향

- 기존 협정 내용의 개선(Improvement)
- 기존 협정 조문의 명료화(Clarification)
- 기존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Expansion)

○ PPMs의 인정

- 표준(Standard) 및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Performance) 위주에서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까지로 확대
- 향후 제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도 TBT협정의 규제를 받게 되어 필요시 WTO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혹은 WTO규범 위반 시 제소의 대상.

○ 비강제 표준에 대한 투명성 요구

-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신설하여 기존의 TBT협정에서는 통보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비강제 표준의 투명성 제고
- 비강제 표준도 입안전에 WTO에 통보하고 간행물에 그 제정 실적 및 계획을 공표.

○ TBT협정 적용범위의 확대

- 기존에는 TBT협정의 준수의무가 중앙정부에만 있었으나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에까지 확대 적용.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TBT협정 준수 책임.

○ 체제개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 GATT사무국을 WTO(세계무역기구)사무국으로 명칭 변경

- 기존 GATT의 모든 행정기능을 WTO에 이관
- TBT협정의 준수의무를 모든 WTO 가입국에 확대
- 분쟁발생시에는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DSB(Dispute Settle Board :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체제내에서 제도적 개선명령 체제로 개편.

IV. TBT협정상의 업무 및 권리

가. 의무 사항

-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 동 협정 제 2조 1항
 - 기술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
 -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동종 국내물품 또는 여타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물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안한 것을 보장
 - 최혜국대우보다 직접적이고 강화된 영향
- 국제표준 우선 준수 의무 : 제 2조 4항
 -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제도를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
- 통보(Notification)의 의무
 -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제도의 준비, 제정, 개정 및 수정 시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비단계에서 WTO사무국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보
 - 통보후 최소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국가 또는 업체가 의견제시 및 적응 배려.
 - 접수된 의견은 상호협의하에 최대한 반영.
- 정보의 제공 및 질의처 설치의 의무
 - 자국의 표준(규격), 기술규정 및 인증관련 규정, 절차 및 제도에 대한 타국의 정보문의 및 질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히 답변할 의무

- 답변기능을 전달할 질의처(inquiry point)를 자국에 1개 이상 설치.
- 공산품: 공업진흥청(표준국)
- 농산품: 국립농산물검사소
- 수산품: 국립수산물검사소
- 보건 위생: 보사부

나. 권리 사항

○ 정보 요구의 권리

- 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관련 규정이나 절차 및 제도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요구.
- 정보 요구의 권리는 질의처 및 이해당사자(제품의 수입, 수출 및 판매 등에 관련된 개인, 업체, 단체 등) 모두에게 있고, 이들은 상대국 질의처에 직접 정보 및 자료 요구.

○ 의견제시 및 협상요구의 권리

- WTO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이 표준, 기술규정,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설정하여 수입을 제한 /
- /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
- / 자국인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하는 등 TBT협정을 위반할 경우
- 피해 당사국(무역상의 이익에 손상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은 상대국에 의견을 제시 또는 쌍무협상에 응하도록 요구.

○ 제소 및 분쟁해결 청구권

- 상대국이 정보제공 요청 또는 협상 요구를 거절 /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 DSB(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

V. TBT 협정문 주요내용

가. 기술규정 및 표준

○ 국제표준과 인증제도가 생산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 동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이들 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게 한다

○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

- 체약국(TBT협정 가입국)들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자국의 기후조건, 지리적 요인, 국가안보, 보건, 위생, 환경보호 등의 요인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 특정 체약국이 기술규정과 표준을 제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GATT사무국을 통하여 타 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

-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들은 기술 규정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에 합리적인 시차를 두어 수출국, 특히 개도국의 수출 업자가 생산방법 또는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용

검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여 정정조치가 가능토록 보장하여야 한다

- 체약국들은 가능한 한 타 체약국 영토내에 있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나 인증서 또는 타 체약국 생산자가 발행한 자기 인증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인증제도

- 인증제도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체약국들은 채택하려는 인증제도를 공표하고 GATT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타체약국에 해당 제도에 관한 내용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 정보 및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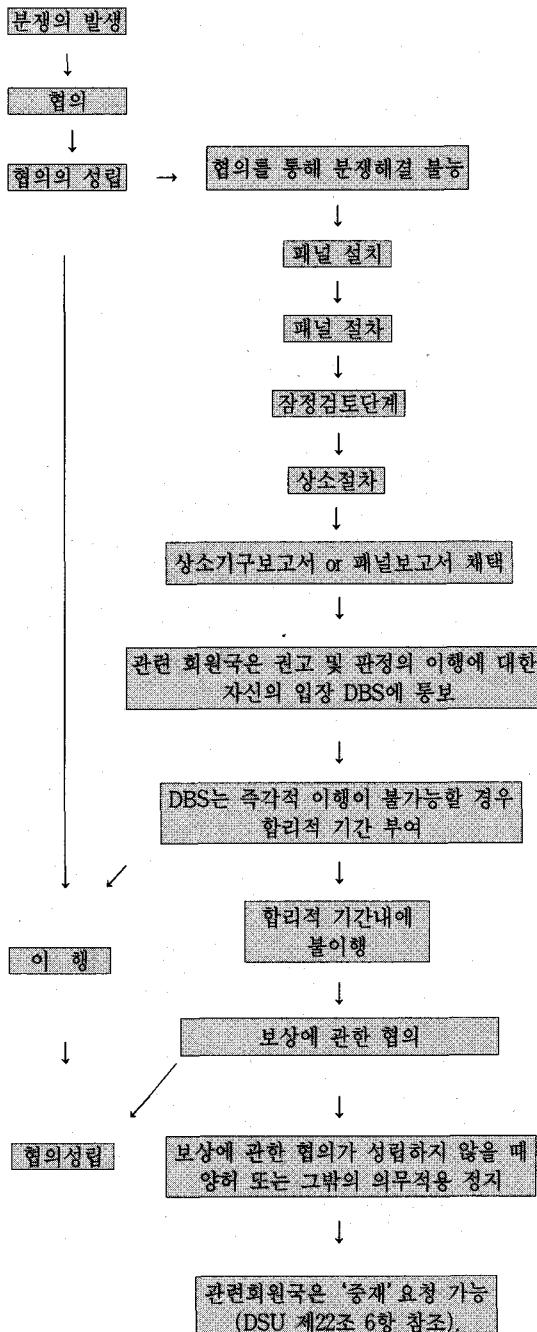
- 모든 체약국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안하였거나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에 대한 타 체약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1개 또는 수개의 질의처(Enquiry Point)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 GATT사무국에 대한 통보(서)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하여야 (되어야) 한다.
- 체약국들은 개도국의 국가표준기구 설립이나 국제표준기구에의 참여에 대해 조언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개도국 우대 조항

-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 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록 국제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개도국의 특수한 기술적, 사회적조건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토착기술과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도국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가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시장 다변화에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분쟁 해결

- WTO체제하의 DSU



- TBT 협정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가입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장벽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반(Working Parities), 기술 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s Group), 조사단(Panels)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약국의 일방이 동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때 상대국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국은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에서도 만족할만한 해결을 얻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는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를 위한 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하며, 동 그룹은 사실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동 과정에서 상호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한다
 - 조사단은 기술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토대로, 가능한 한 설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회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판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계국가에 통보한다

VII. 우리나라 TBT협정 운용

가. 현황

- 국무총리훈령 제268호에 의거한 GATT통보체제 구축
 - 우리나라는 '93.1.1일부로 국무총리훈령 제268호『표준 등 기술규정의 통보절차에 관한 훈령』을 시행, 각부처별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을 외무부를 통하여 GATT(WTO)에 통보해 오고 있다.
 - 현재 경제기획원이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93년 중 각 부처에서 총 26건의 기술규정을 GATT에 통보

나. 통보 절차의 개선

- '94.2월 TBT협정운용 개선을 위한 청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WTO 통보를 위한 절차를 협의, 기존의 통보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
 - 기존의 GATT통보 관행 : 당사자가 법무관실에 관보개재 의뢰후 국제표준과에 GATT 통보 요청
- 향후 통보절차 개선(안) : 국제표준과로 WTO통보 요청후 국제표준과에서 WTO에 통보 확인후 관보개재를 의뢰
 - ① 법무관실에 관보개재 요청공문 발송 이전에 국제표준과에 공문으로 WTO통보 요청(통보문양식 작성 + 요약문, 관련규정 전문 사본 각2부)
 - ② 국제표준과에서 외무부로 WTO통보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관실 및 해당과로 WTO통보 사실을 알림.

지상중계

WTO의 표준규약 (standard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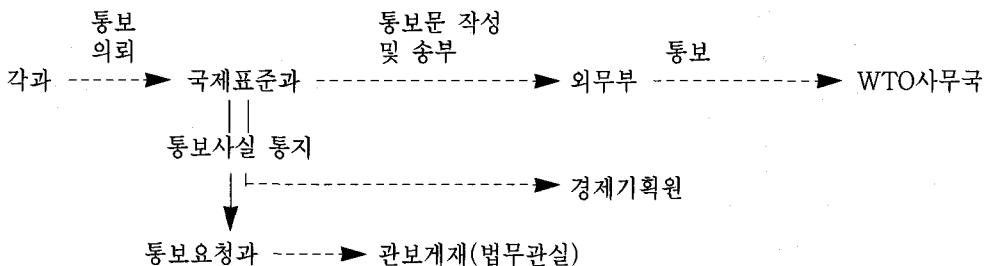
③ 각과별로 관보게재 의뢰

- 각과는 관보게재가 필요한 모든 경우 국제표준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법무관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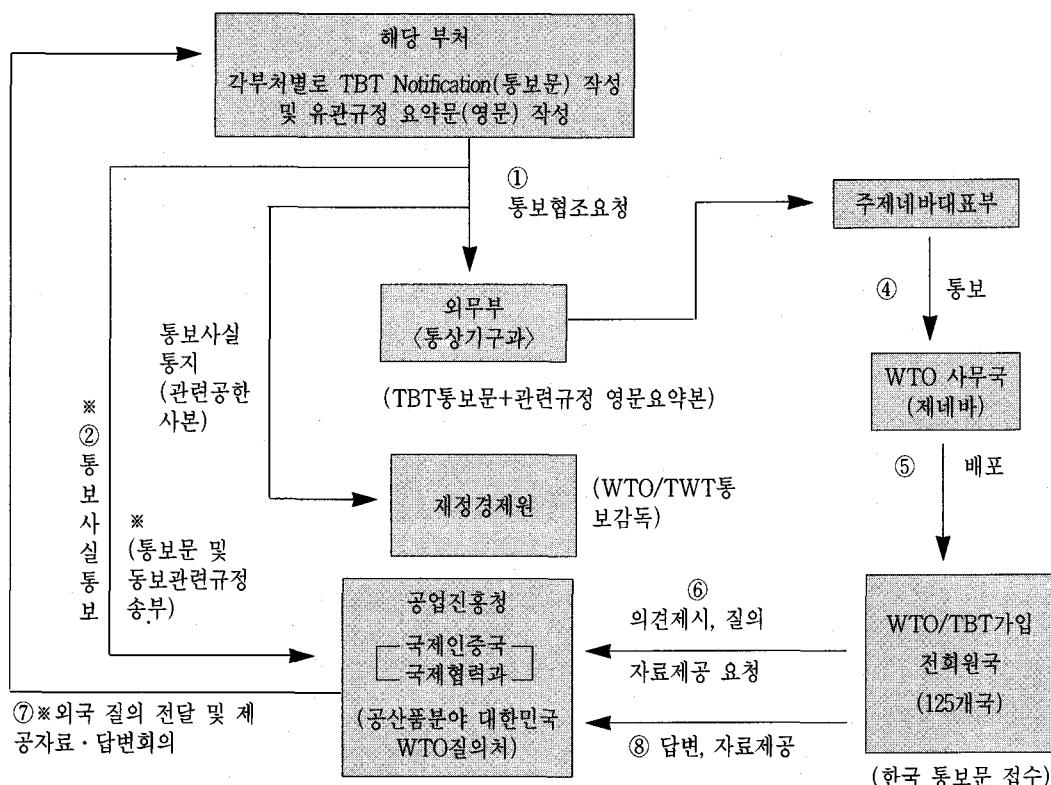
의뢰(통보누락 방지).

- 법무관실은 각과의 관보게재 요청시 국제표준과장 협조 확인후문서접수.

〈 개선된 통보절차 〉



다. 우리나라의 기술규정 WTO/TBT 통보 및 질의답변 절차



* 공업진흥청(국제협력과): · 전화: 503-7938(직통) (공산품 분야 대한민국 WTO질의처)

· 전화: 503-7950~59(교환: 272, 273) · 팩스밀리: 503-7941, 504-5282

라.TBT 관련 WTO 통보 양식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4.

1. Party to Agreement notifying : Republic of Korea
2. Agency responsible : Industrial Advancement Administration
3. Notified under Article 2.5.2[X], 2.6.1[], 7.3.2[], 7.4.1[], Other :
4. Products Covered :
5. Title :
6. Description of content : ○
7. Objective and rationale :
8. Relevant Documents :
9. Proposed dates of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
10. Final date for comments :
11. Texts available from : National Enquiry Point[X] or address of other body